『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2019.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목 차

Ⅰ.	감사청구 개요	1
Ⅱ.	감사실시 개요	2
Ⅲ.	감사대상 관련 현황	3
Ⅳ.	감사결과 총평	9
Ⅴ.	감사결과 세부사항	17
1.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이 신규사업인지 여부	17
2.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 관련 업무처리 적정 여부	23
3.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직원 채용과정의 적정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예산낭비 여부	33
4.	시민건강국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 관련 업무처리 적정 여부	40
Ⅵ.	조치할 사항	54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

Ⅰ 감사청구 개요

☐ 청구인 대표: 000 (유효 청구인 59명)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 ▦▦

☐ 감사청구 경과

❍ 2019. 7. 23.(화): 시민감사청구서 접수

❍ 2019. 9. 3.(화): 시민감사옴부즈만회의 심의·의결(수리)

☐ 감사청구 취지

서울의료원 난임센터 예산낭비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건강 증진과, 서울의료원 진료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시민감사를 청구함.

☐ 감사청구 사항

○ 2019. 6. 7. 서울시가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하려던 계획을 철회하였으나,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를 운영하겠다며 공개채용을 통해 의사 3명을 포함한 16명을 신규 입사시켜 진료 등의 행위도 없이 매월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서울의료원 예산의 약 10%정도만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다며 관리감독을 방관하고 있음.

II 감사실시 개요

☐ 대상기관: 서울의료원,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 감사기간 : 2019. 9. 3.(화) ~ 11. 19.(화)

❍ 실지감사: 2019. 9. 23. ~ 10. 4.

☐ 감사 범위

❍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 추진과 관련한 서울의료원과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제반 업무와 절차

☐ 중점감사 사항

❍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 관련 업무처리 적정 여부

❍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직원 채용과정의 적정 여부와 이와 관련한 예산낭비 여부

❍ 시민건강국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 관련 업무처리 적정 여부

☐ 감사반 편성 : 총 4명

❍ 감사반장: 안영 시민감사옴부즈만

❍ 감사반원: 시민감사팀 박은경 팀장, 남문봉 조사관, 박정곤 조사관

Ⅲ 감사대상 관련 현황

1. 서울의료원 현황 및 예산

□ 시설 및 위치

❍ 소재지(본원):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2011. 5. 삼성동에서 이전)

❍ 규모: 대지 60,662㎡, 연면적 112,481㎡

본관		. **종별**: 종합병원 . **면적**: 98,616㎡ . **층고**: 지하4층, 지상13층 . **용도:** 외래부, 중앙진료부, 병동부 등
전문격리병동		. **면적**: 1,504㎡ . **층고**: 지하1층, 지상2층 . **용도**: 감염병(메르스 등)환자치료 - 입원실 : 전문격리(음압)병실 23병상 - 치료실, 검사실 등
강남분원		. **종별**: 병원 . **면적**: 12,360㎡ . **층고**: 지하1층, 지상3층 . **용도**: 외래진료실, 행정실 등

□ 예산 현황

❍ 예산 총액

(단위:천원)

연도	예산총액	자체예산	시 보조금	국고보조금	비고
2019년	187,667,769	167,607,308	17,108,741	2,951,720	
2018년	167,612,987	146,708,870	18,423,395	2,480,722	
2017년	156,645,363	136,313,473	18,895,509	1,236,381	민간기부 200,000

❍ **보조금 현황(사업별)** (단위:천원)

구분	주요사업		시 보조금	국고보조금
운영 보조금	2019년	공공의료손실보전 등 31개 사업	14,835,737	697,720
	2018년	안전망병원 등 30개 사업	14,803,617	720,660
	2017년	나눔진료봉사단 등 36개 사업	16,522,749	736,381
자본 보조금	2019년	의료장비 기능보강 등 5개 사업	2,273,004	2,254,000
	2018년	의료장비 확충 사업 등 7개 사업	3,619,778	1,760,062
	2017년	BEM 구축사업 등 3개 사업	2,372,760	500,000

2.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추진 현황

- 2019. 3. 26. 민주주의서울 오프라인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처음 공론화되었으나 사업비가 추경예산안에 상정되고 난 뒤 난임당사자들의 거센 반대민원에 부딪혀 사업을 철회하였고 추경예산안도 삭감되었다.

- 그러나 서울의료원에서는 이미 직원 채용과 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 개선 등 사업 추진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서울시 사업 철회 뒤에도 사업 추진을 계속하던 중 2019. 8. 1.에 사업명칭을 가임클리닉으로 변경하였다.

※ 2019년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추진 현황

날짜	서울의료원	서울시
2.20.	공공난임센터 중장기계획 보고	
3.26.		공공난임센터 신설 약속
4.10.	임시이사회 정관 등 규정 개정	->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4.16.)
4.19.		1차협의체 공공난임센터에 부정적의견

4.29.	1단계 시설개선 승인 요청	-> 시설개선 승인 (5.17.)
5.2.	직원채용 공고	
5.29.		공공난임센터 반대 집단민원
6.5.		3차협의체 공공난임센터 반대
6.7.		공공난임센터 사업 철회
6.16.	직원 14명 채용 및 인사발령	
6.19.		시의회 추경안 삭감
7.15.	직원 1명 채용 및 인사발령	
7.26.	직원 2명 채용 및 인사발령	
8.1.	가임클리닉으로 사업계획 변경	
8.7.	2단계 시설개선 승인 요청	-> **승인 보류 중**
9.27.	초음파 5대(9억 상당) 입찰공고	

❍ 서울의료원 투자출연기관 혁신실행계획 보고(2. 20.)

-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에 투자출연기관 혁신실행계획을 보고하면서 '공공난임센터 운영'에 대해 2019년 ~ 2022년까지의 중장기계획으로 보고하였다.
- 보고 내용에는 해당사업이 신규사업/자체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 민주주의서울 오프라인 토론회(3. 26.)

- 토론회에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하겠다고 서울시가 약속하였으나

- 2018년 1월 난임지원에 관한 시민제안이 올라온 이후 오프라인 토론회가 열린 2019년 3월까지 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과 토론를 통해 공공난임센터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의료원 담당부서)와 건강증진과(난임정책 담당부서) 모두 공공난임센터에 대해 사전에 보고나 논의한 적 없다고 함

❍ **서울의료원 임시이사회 개최(4. 10.)**

- 서울의료원 이사회에서 난임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정관과 직제규정 등 개정하였으며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함

- 서울의료원은 임시이사회 개최 전 보건의료정책과에 공공난임센터 사업계획을 메일로 송부하였음

- 보건의료정책과는 2019. 4. 16.에 이사회 의결사항을 승인함

❍ **난임협의체 1차 회의 (4. 19.)**

- 민주주의서울 토론회 이후 난임정책 실현위해 건강증진과 주재로 난임당사자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 열림

- 난임당사자들이 공공난임센터에 대한 부정적 의견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이 보건의료정책과에는 전달되지 않음

❍ **공공난임센터 1단계 시설개선 승인 요청(4. 29.)**

- 서울의료원은 1단계 시설(외래시술부)개선 승인요청하였고 보건의료정책과는 5. 17.에 승인함

❍ **서울의료원 직원채용 공고(5. 2.)**

- 서울의료원 이사회에서 직원채용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이 의결된 이후 홈페이지에 전문의/연구직/간호직 등에 대해 직원채용 공고

❍ **공공난임센터 반대 집단민원(5. 29.)**

- 공공난임센터 신설에 34억 지원하는 추경안에 대해 난임당사자들의 거센 반대민원 제기됨

- 온라인 민주주의서울에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 신설을 반대합니다'라는 시민제안을 비롯 맘카페에 수백개의 반대 댓글 달림

❍ **난임협의체 3차 회의(6. 5.)**

- 난임카페의 1,010명 중 1.4%만 공공난임센터에 찬성하는 설문조사결과 등 난임당사자들의 반대의견 적극 개진

- 반대이유: 전문성/실용성/필요성 미약하여 예산낭비 우려

  ▶ 공공난임센터는 서울시보다 지리적 접근성 취약한 곳에 필요

  ▶ 난임은 고도의 전문화 특수화가 필요한 분야로 성공률이나 인지도가 중요하므로 서울의료원 난임센터 운영 어려울 것임

  ▶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취약계층 혜택 효과 미약

  ▶ 공공에서는 정자/난자은행처럼 필요하나 사업성 떨어지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 **공공난임센터 철회(6. 7.)**

- “난임부부가 원하지 않는 예산 한푼도 안쓴다”라며 서울시는 공공난임센터 사업계획 철회 발표

- 보건의료정책과는 공공난임센터 철회 방침에 대해 서울의료원에 구두로만 전달하고 서울의료원은 자체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힘

❍ **난임전문인력 채용(6. 16. ~ 7. 26)**

- 서울의료원 난임관련 전문의(3명), 연구진(6명), 간호사(7명), 사무직(1명) 채용하고 인사 발령함

❍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추경안 34억원 삭감(6. 19.)**

❍ **서울의료원은 가임클리닉으로 사업변경하고 사업 계속 추진(8. 1.)**

- 공공난임센터에서 가임클리닉으로 사업계획 변경함

❍ **공공난임센터 2단계 시설개선 승인 요청(8. 7.)**

- 서울의료원은 2단계 시설(시술실, 연구실)개선 승인 요청하였으나 보건의료정책과는 현재까지 시설개선 승인 보류 중

❍ **공공난임센터 의료장비 입찰공고(9. 27.)**

-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의 의료장비 중 8.8억원 상당의 초음파 진단기 5set 공개입찰하고 10/18 개찰함

Ⅳ 감사결과 총평

1.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이 신규사업인지 여부

❍ 신규사업 여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적용

- 신규사업일 경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 「지방재정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 서울의료원과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은 서울의료원의 기존 난임진료의 연장으로서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신규사업일 경우의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공난임센터의 설립은 기존 난임진료의 연장이 아닌 신규사업

구분	기존 난임진료	공공난임센터 운영계획
조직	산부인과 내	산부인과와 별도의 **독립된 조직 신설**
공간	산부인과 내	산부인과와 **독립된 공간 구축**
협진	**없음**	산부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등
연구활동	**없음**	생식의학 관련 연구/학회 발표/논문 게재 등
인원	의료진 **1명**	의료진 5명, 연구진 9명 포함 총 **26명**
시설·장비	의료장비 **1억**	의료장비 19억, 시설비 20억 등 총 **41억**
시술	인공수정	인공수정/체외수정/착상전유전자검사 등

- 공공난임센터는 기존의 산부인과와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조직의 신설로 계획되었으며 시술의 내용이나 협진 여부와 연구학술활동 여부 등에 있어 기존 난임진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계획이었으며 인원과 시설장비의 투자에 있어서도 1명에서 26명, 1억에서 41억으로 규모 상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서울의료원의 투자·출연기관 혁신실행계획안(2019. 2. 20.)에도 공공난임센터를 '신규사업으로 분류'하여 2019년 ~ 2022년까지의 중장기계획으로 보고하고 있다.

- 또한 서울시에서의 여러 차례의 공식적인 발언과 시의회 보고자료와 언론 보도자료 등에서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 '설치', '설립'한다는 표현을 반복하는데 이는 해당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따라서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 설립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의 기존 난임진료의 연장으로 보기 어렵고 신규사업으로 보아 관련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 관련 업무처리 적정 여부

(1)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사업변경 승인 절차

❍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사업변경 절차 부적정**

- 공공난임센터의 추진 시, 사업의 신설로 인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일 경우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하지만 사업계획에

대해 이메일로 보고하기만 했을 뿐 이사회 의결 등 관련된 절차를 취하지 않아서 「지방의료원법」을 위반했으며

- 만약 사업의 신설이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나 공공난임센터에 대한 사업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지방의료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 **서울의료원의 가임클리닉 사업변경 절차 부적정**

- 공공난임센터 사업이 철회된 후에도 서울의료원은 자체사업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19. 8. 1. 서울의료원장 결재로 가임클리닉 사업계획을 확정하는데 사업의 재원이 시비 34억원이 줄어들음으로 인해 서울의료원의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열어 안건으로 논의하는 대신 서울의료원장의 결재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 이 역시 사업계획과 예산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지방의료원법」 위반이다.

(2) 서울의료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 여부

❍ **서울의료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나 가임클리닉의 운영계획을 서울의료원장의 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보았고 예산서에 세출예산으로 추가로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

- 특히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의 추경예산이 삭감된 후 자체예산을 사용

하기로 하고 가임클리닉 운영계획을 2019. 8. 1.에 확정하였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의료장비 예산 확보를 위해 2019년 예산서 상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보조금 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업에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여 이 역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3) 정관 개정 시 사전 서울시의회 보고 의무 관련

❍ **정관 개정 시 서울시의회 보고 미이행으로 조례 위반**

-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의료원 조례"라 한다)제10조(지도·감독 등)에는 '의료원은 정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2019. 4. 10.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였으나 사전에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서울시의회 6월 추경안 상정 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사후 보고함에 따라 「서울의료원 조례」를 위반하였다.

3. 공공난임센터 직원 채용과정의 적정 여부와 이와 관련한 예산낭비 여부

❍ **공고 게시기간 미준수로 관련규정 위반**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서울의료원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는 '공고마감일 2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 서울의료원은 직원채용을 위한 공고문을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전에 게시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 특정 병원 출신 합격자 비율 94%

- 한편 사무직 1명을 제외한 합격자 16명 중 특정 병원(◁◁◁◁) 출신 합격자가 15명으로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 의료장비나 시설의 구축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원이 채용되어도 진료나 연구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직원을 시급히 채용해야 할 다른 사유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 특정 병원(◁◁◁◁) 출신을 위해 공고 게시기간을 짧게 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 난임전문진료는 인력과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특수진료분야로서 난임전문의와 연구진 등 전문인력과 고가의 의료장비, 그리고 외래실/시술실/연구실 등을 모두 갖추어야 진료가 가능하다.

- 서울의료원은 규정 상의 공고게시 기간까지 어겨가면서 직원 채용을 서둘렀고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17명(전문의 3명, 연구원 6명, 간호사 7명, 사무직 1명) 채용을 하여 2019년 10월말까지 3.6억원(매월 1.13억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 시술실과 연구실은 아직 발주도 되지 않았고 의료장비도 대부분 입고 전의 상태로서 연구와 시술에 필요한 기구와 시설이 없으므로 채용된 직원들은 당초 계획했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데, 전문의와 간호사의 경우 기존의 산부인과에서 하던 수준의 진료를 하고 있을 뿐이며 연구원의 경우에도 연구학술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서울의료원의 체계적이지 못한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4. 시민건강국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 관련 업무처리 적정 여부

(1) 투자심사 미실시 및 사업의 타당성 미검토

❍ 공공난임센터 설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임

-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제37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공난임센터 설치 사업은 서울시가 서울의료원에 보조금 34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의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의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이다.

- 금액 기준에 있어서도 총사업비 50억원 중 인건비인 9억원을 제외하고 투자사업비에 해당하는 시설비(시설의 구축), 의료장비(동산의 취득), 공기구비품(동산의 취득)이 41억원 으로 4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 미실시

- 서울의료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가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투자심사 의뢰를 하였어야 하나 해당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심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 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 미실시에 대해 적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나, 추경 사유에 '공공난임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없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

-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지방재정법」의 위반이다.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미검토**

- 보건의료정책과는 추경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 의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어떤 형태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는데
- 결국 난임당사자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이 철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수혜 당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수요조사도 없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2) 보건의료정책과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적정 여부

❍ **보건의료정책과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

-「지방의료원법」과 「서울의료원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의 사업계획 등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뚜렷하게 부당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의료원이 사업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이러한 보건의료정책과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권한이자 의무로서 보건의료정책과가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업추진의 부적절성이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소홀**

- 2019. 6. 19.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는 서울의료원이 예산편성 전에 직원을 채용하고 의료장비와 시설개선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이 삭감된 이후에도 서울의료원은 예산편성 없는 지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신뢰상실과 예산낭비

- 공공난임센터 사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서울의료원이 가임클리닉으로 사업의 명칭만 변경한 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 그러면서도 2019. 8. 7. 서울의료원에서 시설개선 사전승인 요청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도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가임클리닉 업무에 필수적인 연구실과 시술실에 대해 발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의료원은 2019년 6월부터 직원 17명을 채용하여 2019년 10월말 현재 3.6억원(매월 1.13억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장비와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 이러한 예산낭비에는 보건의료정책과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책임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Ⅴ 감사결과 세부사항

1.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치가 신규사업인지 여부

□ 관련 법령

【지방의료원법】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지방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확인 사실

(가) 신규사업 여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적용

❍ 공공난임센터가 신규사업이라면

- 「지방의료원법」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항에 따라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3항의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하며, 제37조(투자심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서울의료원과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의 주장

- 서울의료원과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은 서울의료원의 기존 난임진료의 연장으로서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보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일 경우의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서울의료원의 기존 난임진료

❍ 2011년 ~ 2012년 미래맘가임클리닉 운영

- 서울의료원은 2011년 5월 산부인과 내에 미래맘가임클리닉을 운영했었는데, 난임 전문의와 연구원 각1명을 채용하고 27종의 의료장비 2.8억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인공수정의료기관과 체외수정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 미래맘가임클리닉은 '시민들에게 적정수가를 책정하여 불임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출산시대에 난임에 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고 연 120명의 진료인원을 기대하였으나

- 2012년 8월까지의 1년여 기간 동안 인공수정·체외수정 실적이 단 1건으로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게 되었다.

❍ 2013년 체외수정의료기관 폐업신고

- 미래맘가임클리닉을 개설한지 1년여 만인 2012년 7월 난임 전문의가 퇴사하면서 난임치료는 중단되었고 서울의료원은 2013년에 체외수정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 미래맘가임클리닉의 운영을 위해 구입했던 의료장비는 폐업과 동시에 그 처리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7종 중 16종(145,871천원)은 사용가능한 타부서로 이관처리 하였고 나머지 11종(137,334천원)은 지하창고에 보관해오고 있다.

❍ 2015년 난임진료 재개

- 2015년 7월 산부인과에 난임 전문의 1명이 입사하면서 인공수정 시술을 재개하였으나 연구원이나 의료장비 미비 및 체외수정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인해 체외수정시술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 난임치료의 방법

난임치료는 배란유도와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로 나눌 수 있다.

- **배란유도** : 배란이 되지 않는 환자에게 배란이 되도록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
- **인공수정** : 여성의 생식기에 정자를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시술 시 통증이 거의 없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저렴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단순한 의료장비와 설비만 갖추면 가능함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 여성의 난자를 채취한 뒤 시험관 배양액 속에 정자와 난자를 섞어서 인위적으로 수정시키고 배아를 다시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배아 이식의 세 가지 시술이 필요하여 3~4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난자 채취 시 통증이 심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다양한 의료장비와 시설이 필요하다.

(다)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운영계획

❍ 공공난임센터 운영계획

공공난임센터 운영계획안(기획경영팀-747, 2019.4.1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방향

- 센터구축: 공공난임센터 운영으로 진료 기능 특성화
  · 전문의, 간호사, 연구원 등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 의료장비 구입 등
  · 인공수정, 체외수정, 배아동결 융해, 유전진단 등 난임전문진료 제공
- 특화진료: 난임진료 및 특수 클리닉 운영
  · 다수의 관련 진료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진료 제공
  ·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혈액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과 연계
  · 다양한 특수 클리닉 운영으로 개인별 맞춤 진료 제공
- 연구활동: 난임진료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수행
  · 난자채취·배양·수정, 미성숙난자 성숙배양, 배아배양·선별·동결·융해
  · 착상전유전진단(PGD) 및 선별검사 시행
  · 생식의학 관련 연구 및 학회 발표, 논문게재 등

② 소요예산

항목	금액(천원)	내역	
인건비	975,779	26명(의료진5/간호직9/관리직1/연구직9/기능직2)	
시설비	1,919,490	489,000	1단계 외래부 구축
		1,430,490	2단계 시술실, 연구실 구축
의료장비	1,996,008	초음파진단기 등 167점	
공기구비품	157,920	진료데스크 등 182점	
합계	5,049,192	이중 68%인 34억 서울시 지원	

❍ 공공난임센터는 독립된 별도 조직의 신설

- 서울의료원은 문답을 통해 '공공난임센터로 조직 신설이 이루어지면 부서장이 방향을 선택할수 있으며 타 과(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와 협진을 할 수 있고 한 공간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공공난임센터가 산부인과와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계획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라) 공공난임센터가 신규사업인지 여부

❍ 기존난임진료와 공공난임센터의 비교

구분	기존 난임진료[1)]	공공난임센터 운영계획
조직	산부인과 내	산부인과와 별도의 **독립된 조직 신설**
공간	산부인과 내	산부인과와 **독립된 공간 구축**
협진	**없음**	산부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등
연구활동	**없음**	생식의학 관련 연구/학회 발표/논문 게재 등
인원	의료진 **1명**	의료진 5명, 연구진 9명 포함 총 **26명**
시설·장비	의료장비 **1억**	의료장비 19억, 시설비 20억 등 총 **41억**
시술	인공수정	인공수정/체외수정/착상전유전자검사 등

1) 2015년 난임전문의 입사 후

❍ **서울의료원과 서울시 모두 공공난임센터를 신규사업으로 보고함**

- 2019년 3월 민주주의서울에서 공공난임센터에 대해 언급이 시작된 후 2019년 5월 추경안이 상정될 때까지 보건의료정책과나 서울의료원에서 제출한 문서 중 공공난임센터를 서울의료원의 기존 난임진료의 연장으로 발언하거나 보고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 반면, 서울의료원은 2019. 2. 20. 서울시에 투자·출연기관 혁신실행계획을 보고하면서 공공난임센터를 신규사업으로 분류하여 2019년 ~ 2022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보고하였다.

- 또한 서울시에서도 공공난임센터의 신설/설립/설치 등 신규사업으로 간주하여 보고하거나 발언하는 것이 다수 확인된다.

  ▶ 2019. 3. 26. 민주주의서울의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게 해주세요'라는 시민제안과 관련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 설립'을 약속

  ▶ 2019. 5. 23. 추경과 관련한 언론사 보도자료에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39억원을 투입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한다'라고 보도

  ▶ 2019. 5. 23. 시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사업명으로 '공공난임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로 보고

□ 검토결과

❍ **공공난임센터의 설립은 기존 난임진료의 연장이 아닌 신규사업**

- 공공난임센터는 기존의 산부인과와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조직의 신설로 계획되었으며 시술의 내용이나 협진 여부와 연구학술활동 여부 등에 있어 기존 난임진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계획이었으며 인원과 시설장비의 투자에 있어서도 1명에서

26명, 1억에서 41억으로 규모 상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서울의료원의 2019년 투자혁신계획안에도 공공난임센터를 신규사업으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 서울시에서도 공공난임센터를 '신설', '설치', '설립'한다는 표현을 반복하여 해당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따라서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 설립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의 기존 난임진료의 연장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보아 관련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일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한다는 「지방재정법」과 사업의 신설로 인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일 경우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방의료원법」을 검토하였어야 했다.

2.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 관련 업무처리 적정 여부

(1)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사업변경 승인 절차

□ 관련 법령

【지방의료원법】

제9조(이사회)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지방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서울의료원 조례】

제5조(사업계획 등) ①의료원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시작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4>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뚜렷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③ 의료원은 정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확인 사실

❍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으로 인한 사업변경 절차

-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사업은 2019. 3. 26. 민주주의서울 오프라인 토론회에서 난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 신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나 서울의료원의 2019년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2018년 말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2019년에 공공난임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9년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확정된 후 사업의 신설로 인한 사업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의료원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하며
- 만약 사업의 신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의료원법」 제9조에 따르면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지만
- 서울의료원은 2019. 4. 10.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공공난임센터를 위한 인력채용을 위해 정관과 직제규정 등 제 규정 개정만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하였을 뿐
- 공공난임센터 설립에 대해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서울시의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사업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서울의료원의 가임클리닉으로의 사업변경 절차

- 이후, 2019. 6. 7. 공공난임센터 신설사업이 철회되고 관련된 추경예산안 34억원이 2019. 6. 19. 삭감됨에 따라 2019. 8. 1. 서울의료원은 기존의 공공난임센터를 가임클리닉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보조금이 감소한 만큼 자체예산을 증액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 「지방의료원법」 제9조에 따르면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나
- 이러한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의료원은 이사회를 개최

하지 않았으며 그 외의 서울의료원의 어떠한 공식적인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 검토 결과

❍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으로 인한 사업변경 절차 부적정

-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의 추진 시, 사업의 신설로 인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일 경우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하지만 사업계획에 대해 담당부서에 이메일로 보고하기만 했을 뿐 이사회 의결 등 관련된 절차를 취하지 않아서 「지방의료원법」을 위반했다.
- 만약 사업의 신설이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나 공공난임센터에 대한 사업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이 역시 「지방의료원법」 위반이다.

❍ 서울의료원의 가임클리닉으로의 사업변경 절차 부적정

- 공공난임센터 사업이 철회된 이후 서울의료원은 자체사업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19. 8. 1. 서울의료원장 결재로 가임클리닉 사업계획을 확정하는데
- 사업의 재원이 시비 34억원이 줄어들고 그만큼 자체예산이 늘어나게 되어 서울의료원의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열어 안건으로 논의하는 대신 서울의료원장의 결재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 따라서 사업계획과 예산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지방의료원법」에 위반된다.

(2) 서울의료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 여부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확인 사실

❍ 모든 지출은 예산에 세출로 편성되어야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는 서울의료원과 같은 투자출연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공난임센터와 가임클리닉의 소요예산 계획

- 공공난임센터 운영계획(기획경영팀-747, 2019.4.19.)과 가임클리닉 운영계획(기획경영팀-1519, 2019.8.1.)에 다음과 같이 사업의 소요예산을 산출하였다.

구분	공공난임센터	가임클리닉	차액
인건비[2]	975,779천원	516,446천원	(-)459,333천원
시설비	1,919,490천원	1,923,600천원	4,110천원
의료장비	1,996,003천원	2,032,716천원	36,713천원
공기구비품	157,920천원	157,920천원	-
합계	5,049,192원	4,630,682천원	(-)418,510천원

- 그러나, 이러한 지출 계획을 세출로 예산에 추가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였다.

2) 인건비 4.6억원 감소는 실제 채용인원이 줄어들고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한 차이이며 계획의 변경에 따른 감소는 아님

❍ 인건비 집행 현황

- 서울의료원의 2019년 예산서 상 인건비는 수익적지출의 일부로서 정규직연봉제, 정규직호봉제, 별정직, 계약직 등의 편성목으로 나뉘고 세부항목으로 의료직, 간호직, 관리직 등으로 나뉜다. 각 세부항목에는 계산식으로 금액 × 인원 × 월(회)를 표시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
- 인건비 산출근거 상의 '인원'은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2019년 예산서는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로 인한 인원 증가가 반영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며 이후에 해당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다.
-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 운영계획에 총 26명(전문의 5명, 간호사 9명, 연구원 9명, 관리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채용하여 7개월간 975,779천원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17명(전문의 3명, 간호사 7명, 연구원 6명, 사무직 1명)이었으며
- 가임클리닉 운영계획의 소요예산은 실제 채용된 인원 17명에 대한 7개월분 인건비로 516,446천원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19년 10월까지 현재 이들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359,880천원(매월 112,596천원)이다.

※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번	성명	직종	입사일	월 급여	10월말 누적
합계				112,596,740	359,880,410
1	000	◇◇◇	2019.*.**.	********	********
2	000			********	********
3	000			********	********
4	000	◆◆◆		*******	********
5	000			*******	********
6	000			*******	********

7	000			*******	********
8	000			*******	********
9	000			*******	********
10	000			*******	********
11	000	□□□		*******	********
12	000			*******	********
13	000			*******	********
14	000			*******	********
15	000		2019.*.*.	*******	********
16	000			*******	********
17	000	■■■	2019.*.**.	*******	*******

❍ 시설 구축 집행 현황

- 서울의료원의 2019년 예산서 상 시설 구축이라는 항목은 없으며 대신 건물 항목에 시설개선사업비가 있다.
- 2019년 예산서는 공공난임센터로 인한 시설비 증가가 반영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며 따라서 2019년 예산에는 공공난임센터를 위한 시설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를 위한 시설구축을 위해 1단계(외래부 신설) 489,000천원, 2단계(시술부/연구실 신설) 1,430,490천원으로 총 1,919,490천원을 소요예산으로 계획하였으나 이후 가임클리닉 운영계획 상 소요예산은 1,923,600천원으로 소액 증가하였다.
- 2019년 9월말 현재 1단계 비용 444,400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단계 비용 중 설계비 48,335천원은 계약 후 용역이 진행 중이다.
- 2단계 비용의 지출을 위해 서울의료원은 2019. 8. 7. 보건의료정책과에 시설개선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을 보류중인 상태이다.

※ 시설 구축 집행 현황

사업명	공고일자	계약금액(원)	비고
합계		492,734,522	
1단계 시설 설계용역	-	22,000,000	수의계약
1단계 시설 인테리어공사	2019. 6. 3.	287,158,810	
1단계 시설 전기공사		100,046,692	
1단계 시설 통신공사		18,691,400	
1단계 시설 기계설비공사		13,642,620	
1단계 시설 소방보완공사	-	2,860,000	수의계약
2단계 시설 설계용역	-	48,335,000	수의계약

❍ 의료장비 집행 현황

- 서울의료원의 2019년 예산서 상 자본적지출 내에 의료장비 금액은 50.5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48.5억원과 자체재원으로는 긴급교체 및 노후장비보강 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 2019년 예산서에 편성된 의료장비는 보조금 48.5억원을 제외하면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억원이며 그 외에 공공난임센터의 의료장비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지 않았다.

- 2019년 8월부터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입찰공고가 9월말 현재 7건, 896,703천원의 의료장비에 대해 입찰공고가 나간 상태이다.

※ 의료장비 집행 현황

장비명	공고일자	계약금액(원)	비고
합계		896,703,000	
자동혈압계 1SET	2019. 8. 21.	1,250,000	
자동신장체중계 1SET		572,000	
산부인과 검진대 1SET	2019. 8. 30.	6,850,000	
진찰실용 진료의자외 4종		3,200,000	
약품냉장고	2019. 9. 2.	4,191,000	

진료진찰대	2019. 9. 18.	640,000	
초음파진단기	2019. 9. 27	880,000,000	계약의뢰 중

- 서울시의 추경예산이 삭감된 후 자체예산을 사용하기로 한 서울의료원은 의료장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임클리닉 운영계획에 2019년 당초 예산 중 보조금 4,850백만원의 불용액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683백만원을 사용하고 토지 집행잔액 350백만원은 전용하여 사용하겠다고 계획한다.

※ 의료장비 예산 확보 계획(가임클리닉 운영계획(안))

(단위 : 백만원)

과목	당초예산	집행잔액(A)	전용액(B)	가임클리닉 (A+B)	전용후 예산
의료장비	5,050	1,683	350	2,033	5,400
토지	500	500	(-)350		150

❍ 공기구비품 집행 현황

- 서울의료원의 2019년 예산서 상 자본적지출 내 공기구비품 항목은 전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부서명을 명시한 물품으로 나뉜다.

- 전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공공난임센터를 위한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으나 그 외의 물품의 경우는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편성하지 않았다.

- 공공난임센터를 위한 공기구비품의 소요예산은 157,920천원으로 계획하였으며 2019년 9월 현재 2건 96,631천원이 집행되었다.

※ 공기구비품 집행 현황

장비명	공고일자	계약금액(원)	비고
총액		96,631,000	
전산 공기구비품	2019. 8. 13.	33,450,000	
일반 공기구비품	2019. 8. 22.	63,181,000	

□ 검토 결과

❍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위반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나 가임클리닉과 관련된 인건비, 시설비, 의료장비. 공기구비품의 지출에 있어 예산서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

- 특히 의료장비의 경우 가임클리닉 운영계획에 이의 집행을 위해 2019년 예산서 상 보조금의 불용액과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을 사용하여 집행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보조금 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업에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여 이 역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3) 정관 개정 시 사전 서울시의회 보고 의무 관련

❍ 정관 개정 시 사전 서울시의회 보고 의무

- 서울의료원은 2019. 4.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보건의료정책과에 승인 요청을 하여 2019. 4. 16. 승인을 완료하였다.

- 「서울의료원 조례」 제10조(지도·감독 등)에는 '의료원은 정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2019. 4.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였으나 사전에 서울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정관 개정

후 서울시의회 6월 추경안 상정 시 사후 보고하였다.

□ 검토 결과

❍ 정관 개정 시 서울시의회 보고 미이행으로 조례 위반

- 서울의료원에서 정관을 개정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하여 서울의료원 조례를 위반하였다.

3. 공공난임센터 직원 채용과정의 적정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예산낭비 여부

□ 관련 법령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18.9.5.)]

Ⅲ. 직원의 인사

2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통보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0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나. 사전 통보내용

○ 채용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3 채용시험의 공고

가. 공고시기

○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함

나. 공고매체

○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출자·출연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

-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음

○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관련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공고내용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 확인 사실

(가) 직원 채용과정의 적정 여부

❍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신규직원 채용 과정

- 서울의료원에서는 공공난임센터와 관련한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먼저 정관을 개정하여 인력 증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민건강국의 승인을 통해 신규직원 채용이 확정되었다.

- 2019.4.10.: 2019년 제2회 임시이사회 개최(기획경영팀-638호)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제21조(개최 및 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소집통지) 및 제9조(개최 및 의결), 제11조(의안부의)에 의거 제2회 임시이사회 개최

▸ 상정안건: 보고사항 2건, 의결사항 2건

◆ 보고사항

- 2019년 제45기 정기이사회 결과 보고, 2019년 제1회 임시이사회 결과 보고

◆ 의결사항

- 정관 개정: 난임전문 진료 및 특수 클리닉을 위한 인력 증원(총 28명), 연구직 직렬 신설 등
- 제규정 개정: 직제규정(인력 증원 26명), 인사규정(난임 전문인력 및 클리닉 운영을 위한 '연구직' 자격조건 신설), 연봉제 시행규정 등

- 2019.4.23.: 서울의료원 채용계획 사전 통보(총무팀-7646호)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거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0일 전까지 직원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 통보

- 2019.5.2.: 2019년 제24회 정규직 직원모집 공고 방침(총무팀-8020호)

▸ 모집인원 총 20명, 3개 직종 모집(전문의, 간호사, 연구원 등)

- 2019.5.3.: 2019년 제24회 정규직 직원모집 공고
- 2019.5.24.: 제24회 정규직 직원 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

❍ 직종별 모집인원과 응시자격

- 공공난임센터 운영과 관련된 정규직원 모집 인원은 총 18명이며, 직종별로는 전문의 3명, 간호사 9명(4급 1명, 5급 8명), 연구원 6명(수석1, 책임1, 선임2, 주임2)이고, 응시자격은 아래 표와 같이 난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경력직 위주로 모집하였다.

직종(직급)	인원	세부 응시자격의 필수사항
전문의	3명	· 산부인과 전문의 · 종합병원에서 난임관련 전임의 경력 2년 이상
간호사 (4급)	1명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종합병원에서 난임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

간호사 (5급)	8명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종합병원에서 난임관련 근무경력 1년 이상
수석연구원	1명	· 생명과학, 발생생물학, 유전학관련 전공자로 박사학위 소지자 · 배아생성업무경력 10년 이상
책임연구원	1명	· 생명과학, 발생학, 유전학관련 전공자로 석사학위 소지자 · 배아생성업무경력 5년 이상
선임연구원	2명	· 생명과학, 발생학, 유전학관련 전공자로 석사학위 소지자 · 배아생성업무경력 3년 이상
주임연구원	2명	· 생명과학, 발생학, 유전학관련 전공자로 석사학위 소지자 · 배아생성업무경력자

❍ 시험전형 일정과 선발 방법

- 원서접수는 2019. 5. 3. ~ 5. 13.까지로 각 직종별로 모두 접수기간이 동일하였다. 시험일정은 간호사와 연구원이 1차 시험(2019. 5.15.) 및 2차 시험(2019.5.21.) 등은 동일하였으며 전문의의 경우 별도 일정은 공고하지 않았으나, 최종합격자는 직종별 모두 2019. 5. 24. 발표하였다.
- 합격자는 2019. 6. 16.일자로 14명(전문의 3, 간호사 7, 연구원 4), 2019. 8. 1.일자로 2명(연구원 2)이 발령받았다.
- 각 직종별 시험전형 방법은 총 3차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종별로 시험전형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 ▸ 전문의: 서류전형(55점)과 면접시험(45점), 신체검사로 적격여부 판단.
  - ▸ 간호사: 1차는 필기시험(인성검사, 여성건강간호학) 및 서류전형으로 배점은 55점이었고, 1차 합격자 선발기준은 필기시험(50%), 국시원 면허시험(50%)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하며, 2차 면접시험(45점)후 1차 전형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2차 합격자에 한하여 3차(신체, 인성검사)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연구원: 필기시험(55점, 인성검사, 직무능력검사)의 합격자 선발 기준은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하며, 면접시험(45점)후 1차 전형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는 절차는 간호사와 동일하다.

❍ 원서접수 시 수험생의 제출서류와 경력 등 적정 여부

- 원서접수 시 응시생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서울의료원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험공고에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각 직종별로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난임관련 업무 경력을 중요시하여 관련 업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직종별 주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전문의: 의사 및 전문의 면허(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구실적(해당자만)

▸ 간호사: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 국시원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 연구원: 해당 면허(자격)증,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제출서류와 인사카드 등에 기록된 사항(관련 업무 경력, 관련학과 등)은 시험선발 기준에 부합하였다.

❍ 특정병원 출신의 합격자 비율

- 당초 서울의료원의 모집 공고 시 선발인원은 총 18명 이었으나, 최종 합격한 인원은 16명이다. 각 직종별로 합격한 인원은 전문의 3명(당초 모집인원과 동일), 간호사 7명(당초보다 2명 감소), 연구원 6명(당초 모집인원과 동일)이다.

▸ 시험 응시인원은 전문의의 경우 3명이 지원하여 3명 모두 합격하였고, 간호사는 10명이 지원하였으나 5급 1차시험 자격(경력)미달자 1명, 5급 2차시험 즉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자 2명이 탈락하여 최종 7명이 선발되었으며, 연구원은 7명이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 결시로

1명이 탈락하였다.

- 합격자들의 출신기관은 전문의 및 간호사의 경우 모두 ◁◁◁◁ 출신이었고, 연구원은 1명(◆◆◆◆◆)을 제외하고 5명이 ◁◁◁◁ 출신으로 선발되어서 사무직을 제외한 16명 중 15명(94%)이 ◁◁◁◁ 출신이다.

❍ **정규직 직원 모집 공고의 적정 여부**

- 서울의료원에서는 제24회 정규직 직원 모집 공고문(공고번호 제2019-345호)을 2019. 5. 3. 서울의료원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일자리 지원센터에 게시하였으며, 공고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26일간 게시하였다.

-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18.9.5.)」 및 서울의료원의「인사규정 시행내규」제18조(시험공고)상의 채용시험 공고시기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제24회 서울특별시 의료원 정규직 직원 모집'을 위한 서울의료원의 공고문에는 원서접수 마감일이 2019. 5. 13.이므로 행정안전부 지침 및 서울의료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마감일 20일전, 즉 2019. 4. 23.부터 서울의료원이 공고문을 게시하였어야 하나 2019. 5. 3.에 게시함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간 게시하여 관련규정의 공고시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의 설치를 위해 전문의와 연구원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고가의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외래실/시술실/연구실 등 시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 전문인력의 경우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17명(전문의 3명, 연구원

6명, 간호사 7명, 사무직 1명)을 채용을 하여 2019년 10월말 현재 3.6억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 2019년 9월말 현재 대부분의 의료장비가 입고되지 않은 상태이며 1단계 시설(외래실)만이 구축이 된 상태로 2단계 시설(시술실/연구실)은 아직 보건의료정책과의 승인이 보류 중인 상태로서 아직 공사 발주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다.
- 연구원의 경우 6월부터 채용이 되었으나 9월말 현재 연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연구실)과 의료장비가 없어서 연구 학술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 전문의와 간호사의 경우에도 각각 3명, 7명이 추가로 근무하고 있으나 기존의 난임진료를 할 수 있을 뿐 장비와 시설 미비로 인하여 공공난임센터나 가임클리닉 운영계획 상의 체외수정시술 등 특화진료는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검토 결과

❍ 공고 게시기간 미준수로 관련규정 위반

- 직원채용을 위한 공고문을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전에 게시하여 '공고마감일 2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 특정 병원 출신 합격자 비율 94%

- 특정 병원 출신 합격자 비율이 16명 중 15명으로 94%인데
- 의료장비의 구비나 시설의 구축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원이 채용되어도 진료나 연구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직원을 시급히 채용해야 할 다른 사유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 특정 병원(◁◁◁◁) 출신을 위해 공고 게시기간을 짧게 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 2019년 6월부터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매월 1.13억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누적으로는 10월말 현재 3.6억원이 지급되었다.
- 규정상의 공고 게시기간까지 어겨가면서 직원 채용을 서둘렀지만 10월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의료장비가 입고 전의 상태이며 연구실과 시술실은 아직 발주도 되지 않은 상황으로 당초 계획했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서울의료원의 체계적이지 못한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4. 시민건강국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 관련 업무 처리 적정 여부

(1) 투자심사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실시 여부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확인 사실

(가) 투자심사 제도 개요

❍ 목적과 운용 방향

- 목적: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 운용 방향: 일정규모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이행함으로써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재정낭비 최소화

❍ 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이하 “투자심사매뉴얼”이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투자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타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과 현재 현황 수요추세 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 수요도

·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 요구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요구 정도와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수

·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수혜인구,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분석하여 규모·사업비의 적정 산출여부 검토하고 앞으로 수요 추세 등 발전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 심사 시기와 절차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업 주무부서에서 투자사업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투자심사부서에 제출하면서 심사 의뢰를 하면 투자심사부서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나) 공공난임센터 설치사업의 투자심사 대상 여부 관련

❍ 사업 시행의 주체

- 「투자심사매뉴얼」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공공난임센터의 경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의 사업으로 서울시가 사업의 주체가 아니지만 서울시 재원인 보조금 34억을 지원하기로 하는 사업이다.

❍ 사업비 성격과 규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 「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투자사업은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 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 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 공공난임센터의 총사업비 중 운영비 성격인 인건비 975,779천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인 시설비(시설물의 구축). 의료장비(동산의 취득), 공기구비품(동산의 취득)은 모두 투자사업에 해당하며 이 금액이 4,073,413천원으로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 공공난임센터 운영계획서 상 사업 및 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의 재원		계	비고
	서울의료원	시 보조금		
인건비	975,779	-	975,779	운영비(제외)
시설1단계	489,000	-	489,000	시설물 구축
시설2단계	-	1,430,490	1,430,490	시설물 구축
의료장비	-	1,996,003	1,996,003	동산의 취득
공기구비품	157,920	-	157,920	동산의 취득
합계	1,622,699	3,426,493	5,049,192	
인건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			4,073,413	

❍ 사업계획 나누어 수립 시 별도의 신규사업

- 해당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여부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으며

- 해당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심사매뉴얼」에 따르면 1건의 사업이라도 사업계획을 나누어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투자심사 미실시

❍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 미실시

-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는 보조금 34억이 지원되는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에는 추경사유로 '공공난임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보고하면서도 사업성격의 분류를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분류하였다.

-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에서는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 보건의료정책과의 입장

- 보조금 지원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

  · '해당사업은 부동산 동산의 취득 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로서 일반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었다.

  · 또한 보건의료정책과는 '해당사업의 소요예산 중 공기구비품은 운영비로 판단하였고 그 외 시설공사비 및 의료장비는 3,916백만원으로 40억원 미만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상 공기구비품은 자본적지출의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이는 투자심사매뉴얼 상 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투자사업비로 보아야 한다. 다만 내용년수 5년미만이고,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미만인 경우는 수익적 지출의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건당 1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동산으로 분류되는 금액은 113백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4,029백만원으로 40억원을 초과한다.

(라) 공공난임센터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여부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여부**

- 보건의료정책과는 공공난임센터 설립을 위해 보조금 34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어떤 형태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는데

- 시민건강국에서 공공난임센터에 대해 검토한 최초의 자료는 '난임정책 관련 현안보고'(건강증진과, 2019.6.3.)로 추경예산 34억 상정 후 난임당사자들의 반대여론이 본격화된 이후이며 그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는 서울의료원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나 난임지원정책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 모두에 공공난임센터 설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 난임당사자들은 공공난임센터 반대이유 중 하나로 자체 설문조사 결과 1.040명의 참여자 중 1.4%만이 공공난임센터에 찬성하고 있어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사전에 사업 수혜 당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의견수렴이나 수요조사도 한 적이 없었다.

□ 검토 결과

❍ **투자심사 미실시**

- 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을 검토

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보조금 34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37조(투자심사)의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위반이다.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미검토

- 보건의료정책과는 공공난임센터 설치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어떤 형태로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는데
- 결국 난임당사자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이 철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수혜 당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수요조사도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2) 보건의료정책과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적정 여부

□ 관련 법령

【지방의료원법】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계획 등)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뚜렷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 확인 사실

(가) 보건의료정책과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

❍ 관련법령의 적용

-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에 대해 '서울의료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료원법」 제23조는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지방출자출연법」에 비해 「지방의료원법」은 지도감독 권한을 더욱 강하게 부여하고 있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우선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지방의료원법」에서는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의료원 조례」에서는 이러한 사업계획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뚜렷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고 규정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 또한 서울의료원은 「지방재정법」 제32조 5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서울시에 사업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실적 보고와 정산, 운용 평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사업변경에 대한 보건의료정책과의 지도감독 적정 여부

❍ 서울의료원의 사업변경 절차에 대한 지도감독 적정 여부

- 공공난임센터가 서울시에서 철회되었지만 서울의료원에서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 서울시의 정책이 번복되는 과정에서도 서울의료원은 직원을 17명을 채용한 후 인사발령을 하고 20억이 소요되는 시설개선에 대해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하고 9억상당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계속해오고 있다.
- 다만, 2019. 8. 1. 서울의료원장의 결재로 사업계획을 공공난임센터에서 가임클리닉으로 변경하는데 사업계획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공공난임센터	가임클리닉
운영시기		2019년 하반기	**좌동**
인력운용		총 26명	**좌동**(인력확보는 17명)
운영 내용		특화진료와 연구학술활동 등	**좌동**
협진 여부		협진	협진계획 없음
조직 구성		별도의 독립된 조직	산부인과 내 조직
공간 구성		산부인과와 독립된 공간	**좌동**
소요예산	인건비	976백만원	516백만원
	시설비	1,919백만원	1,923백만원
	의료장비	1,996백만원	2,033백만원
	비품	157백만원	157백만원
	합계	5,049백만원	4,630백만원

▶ 인건비의 4.6억원 감소는 실제 채용인원이 줄어들고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한

차이로 계획의 변경에 따른 감소는 아니며 시설비와 의료장비 구입비는 소액 증가함

❍ 서울의료원의 가임클리닉으로 사업변경에 대한 보건의료정책과의 입장

- 공공난임센터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이 사업의 명칭만 변경한 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에 상부에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등 보건의료정책과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 오히려 보건의료정책과는 '공공난임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의료원에 대한 시장지시사항으로 공공난임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관련 계획 수립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의료원에서 추진할 사항'이며, '공공에서 난임정책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산부인과의 난임클리닉을 전문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난임진료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여 서울의료원이 가임클리닉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시설개선 승인을 현재까지도 보류 중

- 반면,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의료원의 시술실과 연구실 구축을 위한 2단계 시설개선 승인 요청(2019.8.7.)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도 사전승인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는데
- 그 사유에 대해 '시민감사 청구 중으로 감사결과에 따라 서울의료원 가임클리닉 운영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보류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의료장비의 구입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진 7명은 6월과 7월에 거쳐 이미 입사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시설개선에 대한 승인처리를 보류함으로 인해 채용된 직원들이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

- 「지방의료원법」 제16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서과 예산서가 확정 후에 사업의 신설로 인한 사업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지자체장은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의료원이 공공난임센터의 추진 시나 가임클리닉의 변경 추진 시 사업계획에 대해 메일로 전달 받았을 뿐 이사회 의결이나 서울시 승인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다)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과의 지도감독 적정 여부

❍ 부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적정 여부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2019. 6. 19. 상임위에 보고한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공공난임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에 집행하고자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서울시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서울의료원이 예산편성 전에 난임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의료장비 구입과 시설개선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절차에 관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문란한 예산 집행 행태'이기에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상임위 개최 후 추경안이 삭감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예산편성 없이 지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 이러한 비정상적인 예산집행에 대하여 보건의료정책과가 서울의료원에 문제제기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 **서울의료원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적정 여부**

-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의 설치를 위해 전문의와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고가의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외래실/시술실/연구실 등 시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 전문인력의 경우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17명(전문의 3명, 연구원 6명, 간호사 7명, 사무직 1명) 채용을 하여 2019년 10월말 현재 3.6억원(매월 1.13억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 감사일 현재까지 1단계시설(외래실)만이 구축이 된 상태로 2단계시설(시술실/연구실)은 아직 시의 승인이 보류 중인 상태로서
- 연구진의 경우 6월부터 채용이 되었으나 10월말 현재 연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과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검토 결과

❍ **보건의료정책과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권한이자 의무**

- 보건의료정책과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권한이자 의무로서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업 추진의 부적절성이나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 **사업변경 절차와 관련한 지도감독 소홀**

- 서울시가 정책사업으로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뒤 당사자들의 반대로 사업을 철회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의료원이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의료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지방의료원법」 상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 경과보고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

❍ 예산편성 없는 지출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서울의료원 예산 편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에 해명을 요구하여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충분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상임위에서 아예 추경예산안이 삭감된 이후에도 서울의료원이 예산편성 없는 지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

❍ 보건의료정책과의 일관성 없는 행정

- 서울시는 공공난임센터와 관련하여 2~3달 사이에 사업을 추진하였다 철회하였고, 이후 서울의료원의 자체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보건의료정책과는 지지하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시설개선 승인은 해주지 않는 등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인해 신뢰를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다.

❍ 서울의료원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소홀

- 전문의와 연구원 등 직원들이 6월부터 채용되어 10월말 현재 3.6억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지만 대부분의 의료장비는 입고 전이며 시술실과 연구실은 발주도 되지 않은 상태로서 채용된 직원들이 당초 계획했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 이에는 보건의료정책과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책임도 부인할 수 없다.

Ⅵ 조치할 사항

□ 행정상 조치: 기관경고 1, 부서경고 1, 통보 1

가.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 추진 업무 부적정

❍ 공공난임센터 신설과 관련한 사업변경 절차 위반

- 「지방의료원법」에 따르면 사업의 신설로 인해 사업이 변경될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의 신설과 관련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관련법령을 위반했는데
- 서울의료원장은 앞으로「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사업변경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임클리닉으로 사업계획 변경 시 절차 위반

- 「지방의료원법」에 따르면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서울의료원은 가임클리닉으로 사업계획 변경 시 이사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관련법령을 위반했는데
- 서울의료원장은 가임클리닉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시급히 이사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편성 없는 지출로 「지방재정법」 위반

- 공공난임센터나 가임클리닉의 2019년 소요예산 50억원에 대해 예산에 세출로 추가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 바,
- 서울의료원장은 현재 가임클리닉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없이 집행되고 있는 지출을 중단하고 예산 편성과 이사회 의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령에 어긋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담당자들에게 직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 채용공고 시 게시기간 준수 위반**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서울의료원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공고마감일 2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나 서울의료원은 공공난임센터 직원 채용을 위한 공고문을 공고마감일 10일 전에 게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 서울의료원장은 직원 채용 시 법령에서 정한 충분한 기간 동안 게시하여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 2019년 6월부터 공공난임센터 관련 17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매월 113백만원(10월말까지 3.6억원)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으나 감사종료일까지도 대부분의 의료장비가 입고 전이며 시술실/연구실은 발주도 되지 않은 상태로서 채용된 직원들이 당초 계획했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따라서 체계적이지 못한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 서울의료원장은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의료원에 "기관경고" 처분**

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관련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업무 부적정

❍ 투자심사 미실시와 사업 타당성 미검토

-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일정금액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나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는데,
- 사업의 수혜자인 난임당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수요조사 등 그 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였다.
-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향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에 대해 반드시 투자심사를 실시하시고,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의료원 사업변경 절차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소홀

- 서울시가 정책사업으로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뒤 당사자들의 반대로 사업을 철회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의료원이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 서울의료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지방의료원법」상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 경과보고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의료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지방의료원법」상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 경과보고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의료원 예산편성 없는 지출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소홀**

- 2019. 6. 19. 서울시의회의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서울의료원이 예산 편성 전에 직원을 채용하고 공사계약 입찰공고를 내는 등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추경예산 삭감 후에도 서울의료원이 예산 편성 없는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나 상부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 따라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의료원이 예산 편성 없는 지출을 하는 등 법령에 위반된 지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지도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예산낭비 초래**

- 서울의료원의 가임클리닉 추진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가임클리닉의 연구실과 시술실 구축을 위한 시설개선 승인 요청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를 보류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 채용된 직원들에게 매월 113백만원(10월말까지 3.6억원)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이나 이들이 당초 계획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들의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의료원의 가임클리닉 사업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부서경고” 처분**

다. 투자심사 실시 제도 미흡

❍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 대상사업 미실시**

-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신설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의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지만 보조금 34억원을 지원하여 시의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하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미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주관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사업 시행의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의 형태로 서울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관부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심사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재정기획관에 “통보” 처분**

□ 신분상 조치: 문책(경징계)요구 1, 훈계요구 1

❍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추진 관련 법령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 ◈◈◈◈◈◈은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법」상의 사업변경 절차와 이사회 의결절차를 위반하였고「지방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므로

- 서울의료원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문책’(경징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에 “문책(경징계)요구” 처분

❍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추진 법령 위반에 관한 관리감독 미흡

- ■■■■■■은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법」 상의 사업변경 절차와 이사회 의결절차를 위반하고 「지방재정법」 상의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며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초래된 부분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 서울의료원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에 “훈계요구” 처분

□ 현지 조치 1

❍ 직원 호봉 산정 업무 소홀

- 서울의료원은 신규 입사한 3명(◀◀◀, ▷▷▷, ▶▶▶)의 직원 호봉을 산정하면서 중복되는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1호봉씩 가산하여 산정함으로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 서울의료원장은 호봉산정이 잘못되어 부적정하게 집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하시고, 최근 3년간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호봉산정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의료원에 “현지조치” 처분